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47호 2010. 8. 02. (월)

고 시	
-----	--

- 고시 제2010-57호 [2010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북구지역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 결정 고시].....2

공 고	
-----	--

- 공고 제2010-52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3
- 공고 제2010-530호 [201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6

## 【 안 내 문 】

<p><input type="checkbox"/> 북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북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p> <p>⇒ 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a>) → 행정정보 → 알림마당 → 북구 공보에서 열람</p>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북구 편집 : 문화홍보과 (☎ 219-7207 행정 7207)

# 고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북구지역 개별공시지가의 지목별 평균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2010. 8. 2.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지역 개별공시지가 지목별 평균치(개발제한구역 제외)

(단위 : 원/㎡)

연번	지 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연번	지 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1	전	151,052	15	철도용지	48,915
2	답	95,747	16	제 방	44,112
3	과 수 원	160,503	17	하 천	46,768
4	목장용지	85,917	18	구 거	86,274
5	임 야	8,249	19	유 지	57,529
6	광 천 지	-	20	양 어 장	-
7	염 천	-	21	수도용지	81,450
8	대	464,366	22	공 원	118,997
9	공장용지	190,862	23	체육용지	406,927
10	학교용지	326,165	24	유 원 지	211,272
11	주 차 장	368,654	25	종교용지	243,295
12	주유소용지	492,068	26	사 적 지	19,800
13	창고용지	353,560	27	묘 지	115,202
14	도 로	84,820	28	잡 종 지	185,895

## 울산광역시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 1. 위탁운영 대상시설

시 설 명	소재지	시 설 규 모		보육정원	비 고
		대지	건물		
숲속어린이집	양정동산 109번지	500㎡	301.82㎡	41명	영아전담

2. 위탁운영기간 : 2010. 11. 1 ~ 2013. 10. 31(3년간)

### 3.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

- 가. 영유아에 전문적 식견과 운영능력이 있는 보육전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자
-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
-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1의 시설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4. 위탁운영 조건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 5. 신청서류 접수

가. 공고기간 : 2010. 8. 2(월) ~ 2010. 8. 23(월)(22일간)

나. 접수기간 : 2010. 8. 16(월) ~ 2010. 8. 23(월)( 8일간)

※ 마감은 사회복지과 사무실 내 18시한 방문자에 한함

다. 설명회 개최

○ 개 최 일 : 2010. 8. 11(수) 14:00,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위탁시설 업무, 위탁절차 등 설명

※ 설명회 불참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해당단체 및 법인(개인)이 짐

라.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북구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팀(울산광역시북구청 4층)

마. 접수방법 : 방문접수(공휴일 접수 불가, 우편 및 대리 접수 불가)

## 6. 신청서류

가. 보육시설 위탁 신청서

나. 이력서, 자기소개서(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다.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 시설장)

라.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 부동산(등기부등본), 동산(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법인(법인명의 재산), 단체(단체명의 재산), 개인(부부)

마.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바. 보육시설 운영 계획서 및 예산서

사.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

아. 등록증,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

자.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 등(법인 및 단체)

차.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개인)

※ 신청서류는 보육시설 위탁신청서를 첫 페이지로 하여 1권의 책자로 제본(상철)하여 15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4부)

## 7. 위탁자 선정기준(배점)

- 운영체의 공신력(10), 운영체의 시설 운영 실적(10), 운영체의 대표 및 시설장 전문성(30), 보육시설 운영 계획(40), 운영체의 재정능력(10)

## 8. 위탁운영자 결정 및 통지

가. 결정방법 : 울산광역시 북구 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함

나. 통 지 : 개별통지

## 9.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울산광역시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10분/프리젠테이션 가능)하여야 하며 질의(10분)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불참시는 신청 의사가 없는 자(포기자)로 간주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수탁운영 시설장(보육시설 위탁신청서 기재된 시설장)

나. 제출된 서류는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 미첨부로 인해 인정이 되지 않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처리하고 선정 이후 결격사유 발생시 선정이 취소됨.

라.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마. 자격증 등 기타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있음.

바. 제출서류 중 원본지참 서류의 원본을 신청시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사본서류를 인정하지 않음.

사.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함.

아. 지정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운영자 결정은 무효로 함.

단,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제외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 사회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사회복지과(여성아동팀) 052-219-7343,7353 FAX 052-219-울산광역시

## 2011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2.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기간 : 2011. 1. 1. ~ 12. 31.(1년간)

#### 2. 지원대상

- 비영리 사회단체로서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북구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우리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북구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북구에 주소를 둔 단체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대상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3. 지원범위

-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본적 경비 제외)
- 지원 대상사업 유형

- ▶ 구정시책 분야 : 친환경 무상급식의 기초마련,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 ▶ 시민의식개혁 분야 : 안보의식 고취, 청소년상담, 청결, 공동체의식 함양 등
- ▶ 문화·체육·보건·환경 분야 : 전통 및 문화예술 행사, 지역주민대상 체육활동, 건강증진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 등
- ▶ 사회복지 분야 :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보육 등
- ▶ 기타 : 구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제외 대상사업

- ▶ 신청부적격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 ▶ 단체설립 목적과 상이한 사업
-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시비 등 보조금 지원 결정된 사업
- ▶ 보조금으로 재 보조하는 사업
- ▶ 단체가 선심성 경비로 지원하는 사업 (기념품구입, 불우이웃돕기 등)
- ▶ 구체적 사업 목적이 없는 자본형성적인 사업 (단체사무실 비품구입 등)
- ▶ 회원의 단합대회, 정기총회 등 단체내부 행사위주사업

####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8. 17 ~ 8. 31, 18:00한 (공휴일 및 주말 제외)
- 제출서류 교부 및 접수처
  - 교부처 : 기획감사실, 사업주관부서, 동주민센터,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http://www.bukgu.ulsan.kr))
  - 접수처 : 사업주관부서
- 제출서류
  - 사회단체 소개서 2부
  -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2부
  -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2부
  - 비영리단체 등록증명서 사본 2부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별도 요구시) 2부
  - ※ 신규 신청 단체 :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2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접수 [우편은 2010. 8. 31(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주 소 : ☎ 683-707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사업주관부서)

#### 5. 지원사업 선정 방법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분은 자체 검토과정을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선정기준은 사회단체의 사업목적 부합성, 사업내용의 적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단체의 특성, 법령 및 조례의 규정 사항, 최근 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심의결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 의회 의결과정을 거쳐 우리구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개별 통지

## 6. 보조금 교부, 정산 및 사업평가

- 보조금은 사업시행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 교부신청 및 지급
- 사업 완료시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보조금 사용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구 보조금결제전용 카드 사용하여야하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정산관리가 원칙임.
- 사후 평가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하며, 익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시 활용

## 7. 기 타

- 본 공고문 외에 기타 의문사항은 우리 구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주관부서 또는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대표전화 289-9999, 기획감사실 219-7203)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조례에 의하여 보조금 환수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